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7-01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6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5가합8762 손해배상(기)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준 담당변호사 김태호
피 고	1.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경선 2. C 주식회사 3. D
변 론 종 결	2026. 4. 28.
판 결 선 고	2026. 5. 28.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모방한 가품'에 관한 금지 청구 부분과 점유해제 및 집행관보관명령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는 15,000,000원, 피고 D은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5. 3. 7.부터 2026. 5. 28.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7-01

3.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 D에 대한 나머지 청구,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의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D이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제품 및 이를 모방한 가품을 피고 B[1], 지점, 가맹사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 양도, 대여, 전시, 수입, 수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들의 본점, 사무소, 영업소, 공장, 창고, 지점, 가맹사에 보관 중인 별지 목록 기재 각 제품과 이를 모방한 상품 일체에 대한 피고들[2]의 점유를 풀고 원고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원고에게, 피고 B는 1,900,000,000원,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는 50,000,000원, 피고 D은 5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1) 원고는 2025. 5. 26.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 '채무자'로 기재하였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선해한다.
2) 원고는 2025. 5. 26.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 '채무자'로 기재하였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선해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7-01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골프스포츠 관련 교육콘텐츠개발 및 교육사업, 골프(E)용품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 B는 'F'라는 상호로 미사본점 골프연습장을 직접 운영하고, 일산점, 파주점, 김포점, 태전점 등을 가맹점으로 두고 있다.

3) 피고 C는 피고 B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F 김포점'을 운영하고 있다.

4) 피고 D은 피고 B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F 태전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의 라이선스 계약 체결 등

1) 미국의 유한책임회사인 G(G,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E® 제품(이하 'E 제품'이라 한다)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16. 3. 20. 소외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의 E 제품을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홍보, 광고, 마케팅, 판매 및 유통한다'는 내용의 '독점 배급 및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2호증).

다. 원고의 저작권 및 상표 등록

1) 원고는 H일자 아래와 같은 등록상표(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 한다)의 상표권 등록을 마쳤다(갑 제17호증).

○ 표장: 

○ 출원일/ 등록일/ 상표등록번호: I일자/ H일자/ J

○ 지정상품: 제41류 골프 연습장 서비스업, 골프관련 동영상강의업, 골프학원 경영업, 골프관련 스포츠경기제공에 관한 상담 및 자문업, 골프관련 스포츠경기조직에 관한 정보제공업, 골프관련 인터넷강의업, 골프레슨업, 골프시설운영업, 골프용품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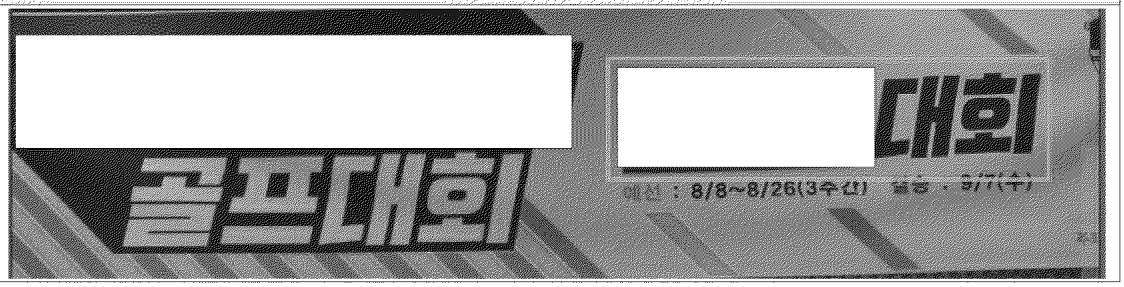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7-01

업, 골프체험공간 운영업, 골프장피팅업, 골프지도업, 골프채 피팅업, 골프티칭 프로지도육성업, 골프피팅 교육업, 골프행사조직업, 유아 및 청소년 대상 골프레슨업, 골프시설 제공에 관한 상담 및 자문업, 골프시설제공에 관한 정보제공업, 오락설비 공급에 관한 상담 및 자문업

2) 원고는 K일자 한국저작권위원회에 'L'이라는 제호로 E 골프 매뉴얼에 관하여 그 종류를 어문저작물>사용설명서로 하여 M일자 창작을 원인으로 한 저작권 등록을 마쳤다(갑 제14-1호증).

라. 피고들의 표장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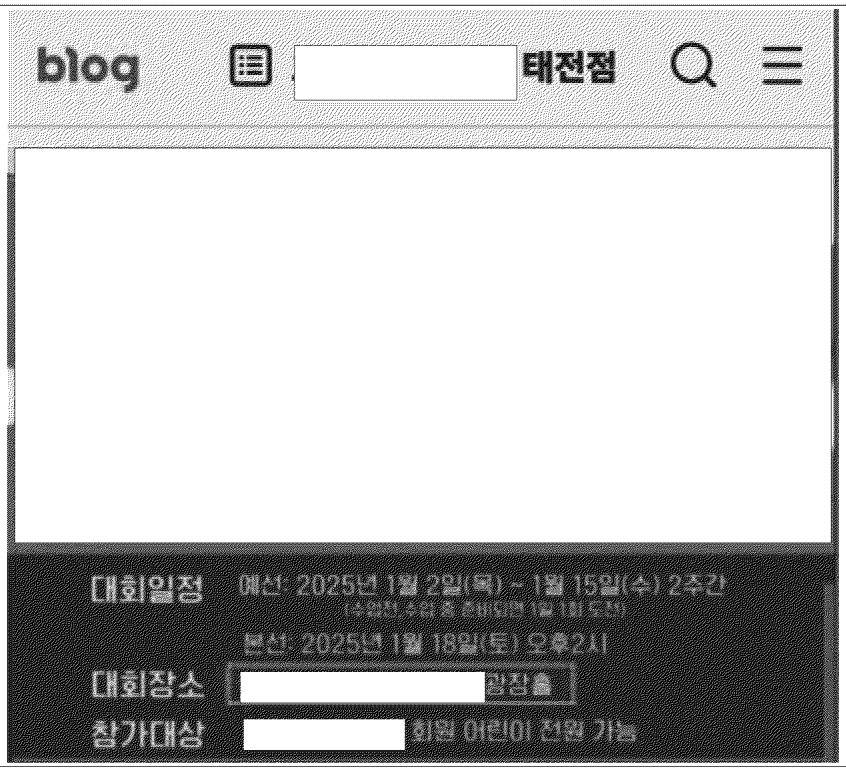
피고 B는 아래 표 순번 1, 2항 표장을, 피고 D은 아래 표 순번 3항 표장을 사용하였다(이하 아래 표 순번 N항 표장을 '피고 사용 제N 표장'이라 한다).

순번	피고의 사용행위
1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7-01

2	 16 맞춤레슨 친절한 설명으로 자세교정 . #골프입문 #골프 #골프레슨 #골프레슨 #골프 #골프 #골프수업 #골프 #골프 #골프레슨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간단히 보기 2021년 5월 23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7-01

3	

마. 관련 사건 경과

1) 원고가 피고 B의 대표이사, 피고 C의 대표이사, 피고 D을 저작권법위반 및 상표법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안에서, 경기하남경찰서는 2025. 4. 2. '피의자들에게 저작권법 위반의 고의가 없고, 피의자들이 행위 당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주지성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등록상표가 관련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상태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불송치(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

2)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 B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5. 7. 29. '원고가 주장하는 성과가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가치가 있는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크고, 피고 B가 E 대회 표시를 1회 사용한 이후 위 표장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피고 B가 'E 광장홀' 또는 E 룸, E 골프라는 표장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7-01

자신의 골프연습장 서비스업 및 관련 가맹사업을 표시·광고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합20230호, 을가제20호증).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 내지 17, 21, 31호증, 을가 제18 내지 20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모방한 가품'에 관한 금지 청구 부분과 점유해제 및 집행관보관명령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모방한 가품'에 관한 금지 청구와 점유해제 및 집행관보관명령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모방한 가품'에 관한 금지 청구 부분

1) 원고는 피고 B를 상대로 '모방한 가품'의 사용, 양도 등 금지를 구하고 있다.

2) 민사소송에서 청구취지는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므로, 특허권에 대한 침해의 금지를 청구하는 경우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제품이나 방법은 사회통념상 침해의 금지를 구하는 대상으로서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17090 판결).

3) 청구취지 기재 '모방한 가품'과 같은 기재만으로는 금지를 구하는 대상을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다. 원고가 구하는 위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판결이 선고될 경우, 판결 주문 자체의 특정성을 갖출 수 없고, 집행기관으로서도 집행을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모방한 가품'의 사용, 양도 등의 금지 청구 부분은 그 청구취지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7-01

나. 점유해제 및 집행관보관명령 청구 부분

1) 원고는 피고 B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을 구함과 동시에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들의 본점, 사무소, 영업소, 공장, 창고, 지점, 가맹사에 보관 중인 별지 목록 기재 각 제품과 이를 모방한 상품 일체에 대하여 피고들의 점유를 풀고 원고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할 것을 구하고 있다.

2) 본안재판절차와 강제집행절차는 준별되는 절차로서, 각각의 절차를 규율하는 법률도 별도의 단행법으로 되어 있는 우리 민사소송 체계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재판절차에서는 강제집행의 처분을 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 부분 청구는 일종의 가처분을 구하는 것으로서, 본안판결(집행권원)을 얻기 전에 급박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전절차로서 위와 같은 가처분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당사자들 사이의 다툼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종국적인 판단(집행권원)을 결정하는 본안재판절차에서 본안판결의 확정 전에 위와 같은 임시처분을 구하는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에 관한 본안판결을 받아 집행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달리 별도로 소로써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점유해제 및 집행관보관명령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가. 부정경쟁방지법에 기한 청구

1) 피고 B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원고의 상품표지인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E'라는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원고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였으므로, 이러한 피고 B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부정경쟁행위(이하 '가목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7-01

부정경쟁행위'라 한다)에 해당한다.

2) 피고 B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원고의 영업표지인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E'라는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원고의 영업과 혼동하게 하였으므로, 이러한 피고 B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부정경쟁행위(이하 '나목 부정경쟁행위'라 한다)에 해당한다.

3) E 제품 및 이를 활용한 교육 시스템과 이에 따른 브랜드 파워(이하 합하여 '원고 주장 성과'라 한다)는 원고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하는데, 피고 B는 원고가 독점적 국내 유통권을 가진 E 제품을 원고를 통하지 않고 구매하거나, E 제품 가품을 구매하여 어린이 골프사업 및 이를 위한 골프대회 개최에 사용하고 있는바,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부정경쟁행위(이하 '파목 부정경쟁행위'라 한다)에 해당한다.

4)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에 기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지 등을 구하고,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에 기하여 손해배상을 구한다.

나. 저작권법에 기한 청구

원고는 E골프 교육 교재인 'L'을 창작하여 저작권 등록을 마쳤는데, 피고 C는 F 김포점의 운영자로서 원고가 저작권을 갖는 글, 그림을 그대로 인스타그램에 게시하거나 그 내용을 그대로 또는 각색하여 어린이 골프 교육에 활용하였으므로, 이러한 피고 C의 행위는 원고의 위 저작물에 관한 복제권, 전송권, 배포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원고는 저작권법 제125조, 126조에 기하여 피고 C에게 손해배상을 구한다.

다. 상표법에 기한 청구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이다. ① 피고 B는 2022. 8. 8.경 'E 대회'라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7-01

이름의 골프대회를 기획·운영하고, 이를 위하여 위 명칭을 사용한 현수막을 게시함으로써 피고 사용 제1 표장을 사용하였고, ② 피고 B는 2020. 5. 29.경부터 이 사건 소제기일까지 12개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E골프', '#E'라는 해시태그를 사용함으로써 피고 사용 제2 표장을 사용하였으며, ③ 피고 D은 F 태전점을 운영하면서 2025. 1. 2.경부터 2025. 1. 15.경까지 어린이 골프대회 예선, 2025. 1. 18. 어린이 골프대회 본선을 개최하고, 이를 홍보하기 위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 게시물에 자신의 영업시설 내 특정 구역을 'F E 광장홀'이라 기재함으로써 피고 사용 제3 표장을 사용하였고, 이로써 피고 B, D은 각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상표법 제110조 제6항에 기하여, 피고 B, D에게 손해배상을 구한다.[3)]

4. 부정경쟁방지법에 기한 청구

가. 가목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2001. 2. 3. 법률 제6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이라고 함은 단순히 사용하고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계속적인 사용과 광고선전 등으로 우월적 지위를 획득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널리 알려진 상표 등인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일응의 기준이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다52995 판결).

2) 판단

3)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 가목, 나목, 파목 위반에 기한 금지청구,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 가목, 나목, 파목 위반 및 각 상표법 위반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각 선택적 병합관계로 보고 판단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7-01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로서 주지성을 획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나목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표장(표장)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는 국내 전역 또는 일정한 범위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이 그것을 통하여 특정 영업을 다른 영업과 구별하여 널리 인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인지는 사용 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거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는지가 일응의 기준이 되고, '영업표지의 유사' 여부는 동종 영업에 사용되는 두 개의 영업표지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구체적인 거래실정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영업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한다. 한편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는 영업표지 자체가 동일하다고 오인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당해 영업표지의 주체와 동일·유사한 표지의 사용자 간에 자본, 조직 등에 밀접한 관계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7-01

있다고 잘못 믿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그리고 그와 같이 타인의 영업표지와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영업표지의 주지성, 식별력의 정도, 표지의 유사 정도, 영업 실태, 고객층의 중복 등으로 인한 경업·경합관계의 존부 그리고 모방자의 악의(사용의도)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9822 판결).

2) 판단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로서 주지성을 획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파목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은 그 보호대상인 '성과 등'의 유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되고,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다.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공공영역, 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파)목이 정하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7-01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가 제1, 2, 4 내지 6, 8 내지 11, 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 성과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원고의 성과 등'에 해당한다거나, 피고 B가 이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 원고가 '골프스포츠 관련 교육콘텐츠개발 및 교육사업 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원고가 원고 주장 성과를 만들기 위하여 투입한 노력이나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나) 원고가 원고 주장 성과의 근거로 제출한 자료 중 일부는 사단법인 N의 활동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사단법인 N를 설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사단법인 N의 성과 혹은 이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나 비용을 원고의 성과 혹은 이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나 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설령 원고가 '골프스포츠 관련 교육콘텐츠개발 및 교육사업 업계'에서 상당한 고객흡입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고객흡입력이 소외 회사의 E 제품에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7-01

고객흡입력에서 기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라) 피고 B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골프 레슨 등 골프 교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 B는 독자적인 교육 커리큘럼 및 교육매뉴얼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 B의 교육 커리큘럼이나 교육매뉴얼이 원고가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주장·증명이 제출되지 않았다.

마) 피고 B가 원고의 온라인 판매사이트 등에서 E 제품을 구매하여 골프 교육사업을 영위하면서 이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 B가 시중에서 E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 주장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부정경쟁방지법 가목, 나목, 파목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전제로 한 이 부분 원고의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5. 저작권법에 기한 청구

가. 관련 법리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7-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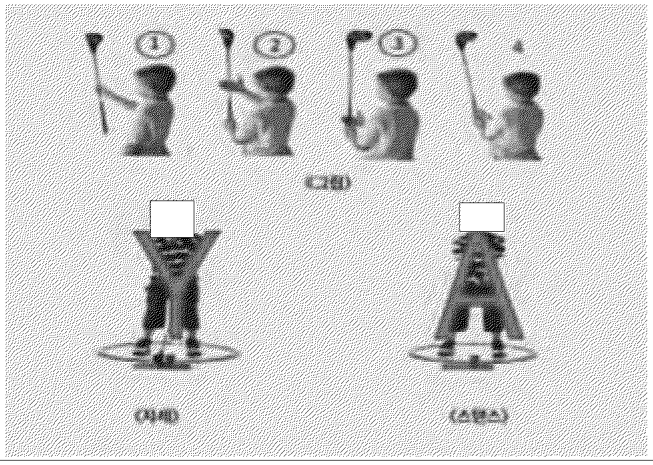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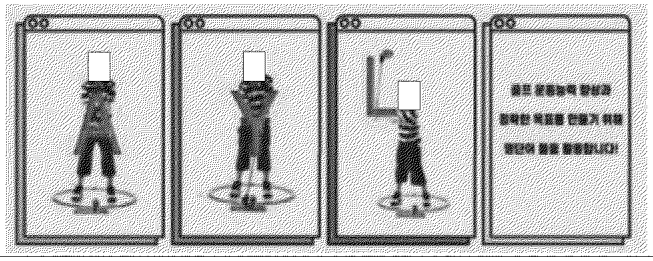
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으로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므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복제된 창작성 있는 표현 부분이 원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적·질적 비중 등도 고려하여 복제권 등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6806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L'의 그림

가) 원고가 K일자 'L'이라는 제호의 어문저작물에 관하여 M일자 창작을 원인으로 저작권등록을 마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L'에 기재된 그림과 피고가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게시물의 그림이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사실(갑 제14-2, 15호증)은 인정할 수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7-01

L (갑 제14-2호증)	
피고의 인스타그램 게시물 (갑 제15호증)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L' 중 피고의 인스타그램 게시물과 유사한 원고의 사진들(이하 '계쟁 부분'이라 한다)에 어떠한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되어 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증명이 없는 점, ② 계쟁 부분은 골프 그립 잡는 방법 및 순서, 골프 스윙을 준비할 때의 자세에 관한 사진으로서, 이론이나 개념을 묘사하는 것에 불과하여 누가 하더라도 비슷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된 물품이 저작권법상 등록대상인 '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의 형식적 요건에 관하여 심사할 권한은 있으나, 더 나아가 개개 저작물의 독창성의 정도와 보호의 범위 및 저작권의 귀속관계 등 실체적 권리관계까지 심사할 권한은 없는바(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L'에 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등록을 마쳤다는 사정만으로 'L'의 계쟁 부분에 창작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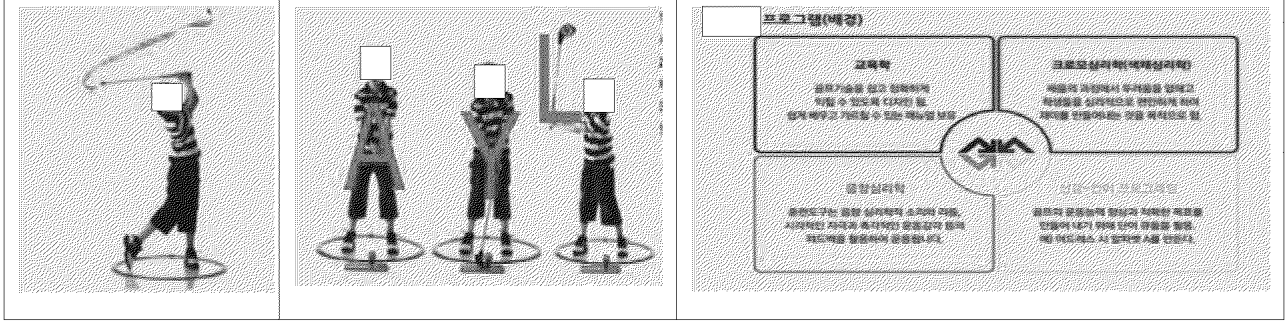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7-01

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계쟁부분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창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홈페이지에 게시된 그림 및 글

가)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골프에 관한 내용을 게시한 홈페이지인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아래와 같은 사진들이 게시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갑 제20호증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위 사진들 및 설명글에 어떠한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되어 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증명이 없는 점, ② 나아가 위 홈페이지의 주소는 '(인터넷주소 1 생략)'인데 'O'는 사단법인 N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설령 위 사진들 및 설명글의 창작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사진들 및 설명글은 사단법인 N의 저작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사진들 및 설명글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창작물에 해당하고, 원고가 위 사진들 및 설명글의 저작권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6. 상표법에 기한 청구

가. 상표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7-01

1) 관련 법리

둘 이상의 문자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 문자에 의해 생기는 외관,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문자들의 결합상태 등에 따라 '독립하여 자타 상품의 식별력을 가진 구성의 일부' 즉 요부만으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요부를 분리 내지 추출하여 그 부분에 의해 생기는 외관,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결합상표가 식별력 있는 문자 부분과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문자 부분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식별력 있는 문자 부분을 분리 내지 추출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문자들이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다거나 거래실정상 항상 전체 문자로서만 인식되고 통용되어졌다는 사정 등이 없는 한 그 중 식별력 있는 문자 부분만으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해야 할 것이며, 어느 문자 부분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지 여부는 그 부분이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후3502 판결).

2) 이 사건 등록상표와 피고 사용 제1, 2, 3 표장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

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 추출

이 사건 등록상표 '[]'가 'E'를 가로 방향 1줄의 검정색 글자로 표시하여 구성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등록상표를 접하는 수요자들은 'E'가 상품의 이름을 표현하기 위한 부분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므로, 'E'가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요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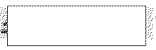
나) 피고 사용 제1 표장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7-01

(1)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가 2022. 8. 8.부터 2022. 8. 26.까지 골프대회를 개최하면서 피고 운영 골프 연습장에서 피고 사용 제1 표장 ''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 사용 제1 표장을 접하는 일반 수요자들은 위 표장이 부분과  부분의 결합으로 구성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위 각 부분 중  부분은 'E'라는 글자의 식별력을 높이기 위하여 파란 바탕에 하얀색으로 'E'를 표시한 것이고,  부분은 보통명사에 해당한다. 결국 피고 사용 제1 표장의 'E' 부분이 식별력 있는 문자 부분으로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요부이다.

다) 피고 사용 제2 표장

(1)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가 2020. 5. 29.부터 현재까지 12개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라는 해시태그를 기재하여 광고함으로써 피고 사용 제2 표장 '#'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한편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가 '#E'라는 해시태그를 기재한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게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 피고 사용 제2 표장을 접하는 일반 수요자들은 위 표장이 # 부분, 부분,  부분의 결합으로 구성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위 각 부분 중 # 부분은 인스타그램의 해시태그를 의미하는 것이고, 부분은 'E'라는 글자를 파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7-01

색 글자로 표시한 것이며, []부분은 보통명사에 해당한다. 결국 피고 사용 제2 표장의 'E' 부분이 식별력 있는 문자 부분으로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를 수행하는 요부이다.

라) 피고 사용 제3 표장

(1)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D이 2025. 1. 2.경부터 2025. 1. 15.경까지 어린이 골프대회 예선을, 2025. 1. 18. 어린이 골프대회 본선을 각 개최하였고, 그 무렵 이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피고 D 운영 블로그의 게시물에서 피고 사용 제3 표장 '[]'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 사용 제3 표장을 접하는 일반 수요자들은 위 표장이 [] 부분과 []부분의 결합으로 구성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위 각 부분 중 []부분은 'E'라는 글자의 식별력을 높이기 위하여 파란 바탕에 하얀색으로 'E'를 기재한 것이고, []부분은 광장홀이라는 보통명사에 해당한다. 결국 피고 사용 제3 표장의 'E' 부분이 식별력 있는 문자 부분으로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요부이다.

3) 이 사건 등록상표와의 요부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와 피고 사용 제1, 2, 3 표장의 요부는 모두 'E'로, 그 외관, 호칭, 관념이 모두 동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피고 사용 제1, 2, 3 표장은 서로 동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지정상품의 동일·유사 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사용 제1, 2, 3 표장이 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7-01

프레슨업(피고 사용 제2 표장) 또는 골프행사조직업(피고 사용 제1, 3 표장)에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골프레슨업, 골프행사조직업과 동일하다.

5) 피고 B,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 D 주장의 요지

(1) 상표의 사용 부존재

피고 B는 골프대회 운영 중 한차례 현수막에 'E'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을 뿐이고, 피고 D은 피고 사용 제3 표장을 골프대회 장소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위 피고들이 골프대회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위 표장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이는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상표침해의 고의 또는 과실 부존재

피고 B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존재하는지도 알지 못하였고, 피고 D은 피고 B로부터 위 대회가 이루어지는 장소의 명칭이 'E 광장홀'이라 전달받아 이를 'F 태전점' 내 광장을 지칭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상표침해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

나) 판단

(1)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사용 제1 표장이 출처 표시 및 자타 상품 식별 표지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피고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을다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D이 운영하는 'F 태전점'에 광장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E 광장홀'이라 불리지는 않고 있다는 사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7-01

을 인정할 수 있고,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장소의 명칭을 단순히 장소의 표시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 D은 'F 태전점이 개최하는 골프대회'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피고 사용 제3 표장을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 D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표침해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는 주장

(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21666 판결 참조).

(나) 갑 제3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측 P이 2022. 6. 21. 피고의 대표이사에게 '조금 전 전화드렸던 국내 E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A P입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송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 B는 그 무렵 이 사건 등록상표의 존재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의 과실 추정을 뒤집기 어렵고, 이 부분 피고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을다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D이 피고 B로부터 'F 태전점이 개최하는 골프대회'가 이루어지는 장소의 명칭이 'E 광장홀'이라 전달받고 피고 사용 제3 표장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E 광장홀'이라는 명칭의 장소가 존재하지 않았던 이상, 위와 같은 사실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D의 과실 추정을 뒤집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 D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소결론

피고 B, D은 피고 사용 제1, 2, 3 표장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7-01

한 상품에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① 피고 B가 2022. 8. 8.부터 2022. 8. 26.까지 피고 사용 제1 표장을 사용함으로써, ② 피고 B가 2020. 5. 29.부터 이 사건 소 제기일까지 12개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피고 사용 제2 표장을 사용함으로써, ③ 피고 D이 2025. 1. 경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의 게시물에 피고 사용 제3 표장을 사용함으로써 각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상표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 B, D은 원고에게 위 각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한편, 피고 B는 피고 사용 제1, 2 표장을 피고 B 운영 골프 연습장에서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에게 이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상표권자의 손해 발생에 관한 주장·입증의 정도에 있어서는 손해 발생의 염려 내지 개연성의 존재를 주장·입증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상표권자가 침해자와 동종의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증명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 침해에 의하여 영업상의 손해를 입었음이 사실상 추정된다고 볼 수 있는데(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3119 판결 참조), 갑 제2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가 모두 '골프행사조직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의하여 원고에게 영업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이 추정되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추정을 뒤집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는 상표법 제110조 제6항에 기하여 피고 B, D에게 손해배상을 구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7-01

이 사건은 피고 B, D의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밝히는 것이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표법 제110조 제6항에 기하여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 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기로 한다.

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는 204. 12. 13. 'A 대전 Q골프아카데미'와 지점 설립 계약을 체결하며 5년 동안의 골프아카데미 콘텐츠 사용료를 50,000,000원으로 정하였는데, 위 콘텐츠 사용료에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료 및 원고의 E 제품에 관한 각종 콘텐츠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등록상표의 통상적인 사용료는 위 금액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D은 골프대회의 홍보를 위한 블로그 게시물에 피고 사용 제3 표장을 사용하였는데, 위와 같이 골프대회의 홍보를 위한 사용은 골프대회가 개최되기까지의 일시적 사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위 피고들의 침해행위 경위·기간·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 B의 상표권 침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15,000,000원으로 정하고, 피고 D의 상표권 침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1,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피고 B는 15,000,000원, 피고 D은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의 침해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5. 3. 7.부터 각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6. 5. 28.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7-01

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7. 결론

이 사건 소 중 '모방한 가품'의 금지 청구 부분과 점유해제 및 집행관보관명령 청구 부분은 각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B, D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 D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현석

판사 이혜인

판사 김선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7-01

별지

목 록

1.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7-01

2.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7-01

3.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7-01

4.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7-01

5.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7-01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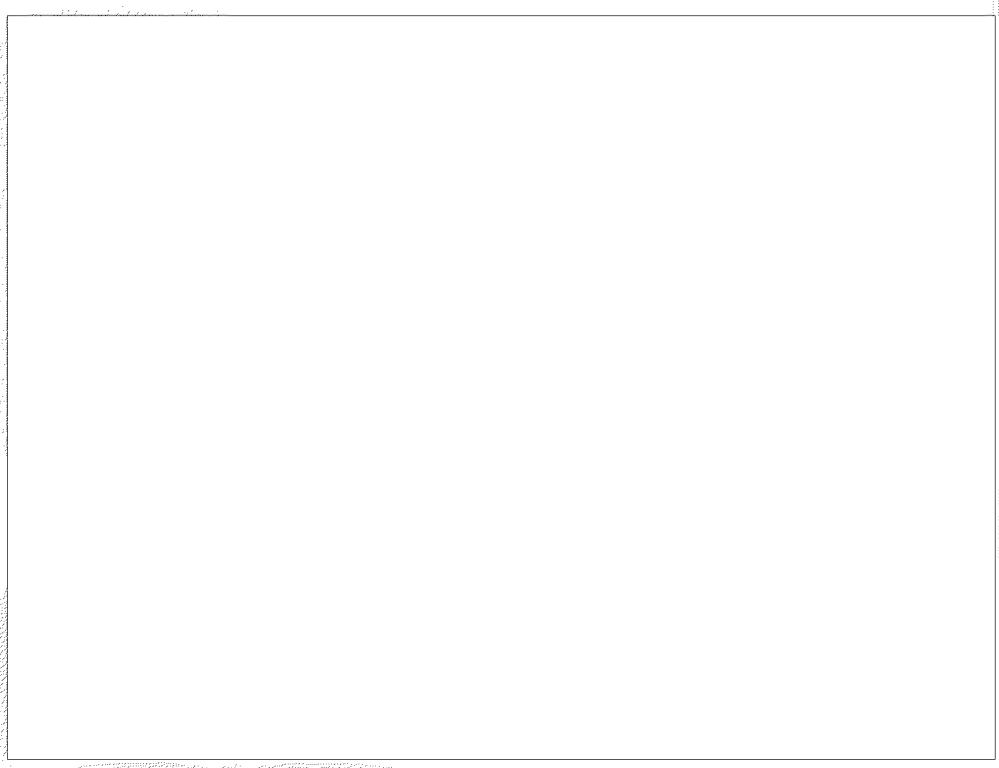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7-01

7.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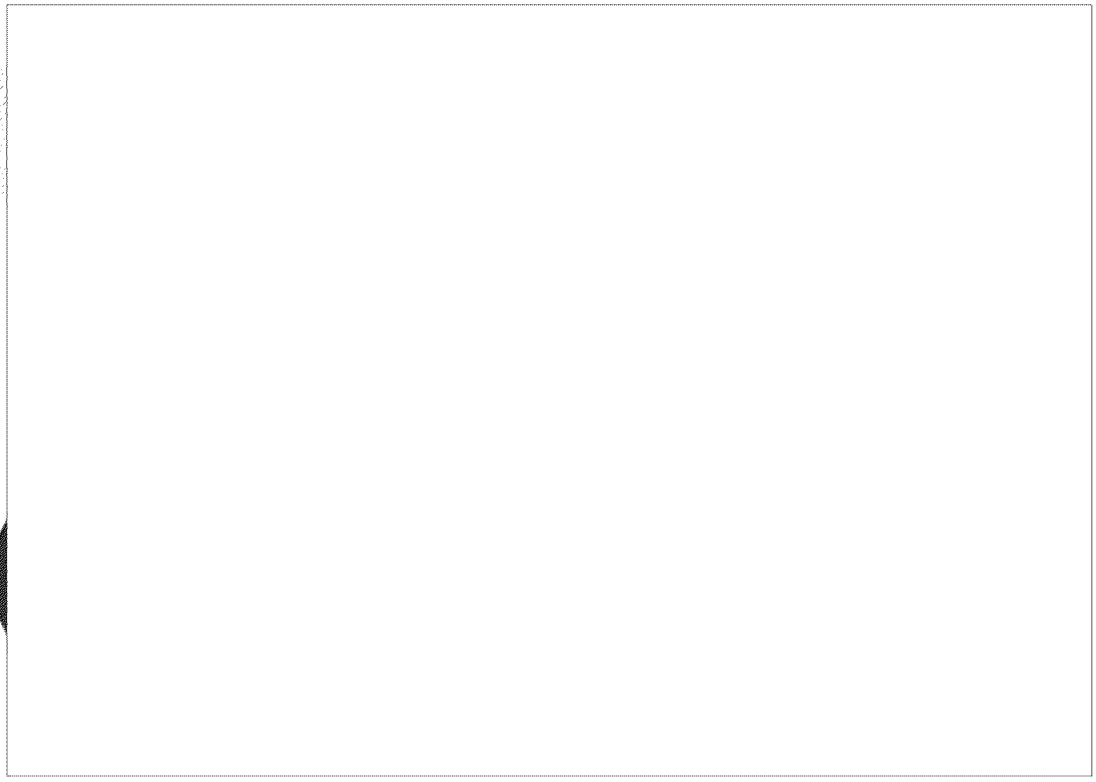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7-01

9.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7-01

1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7-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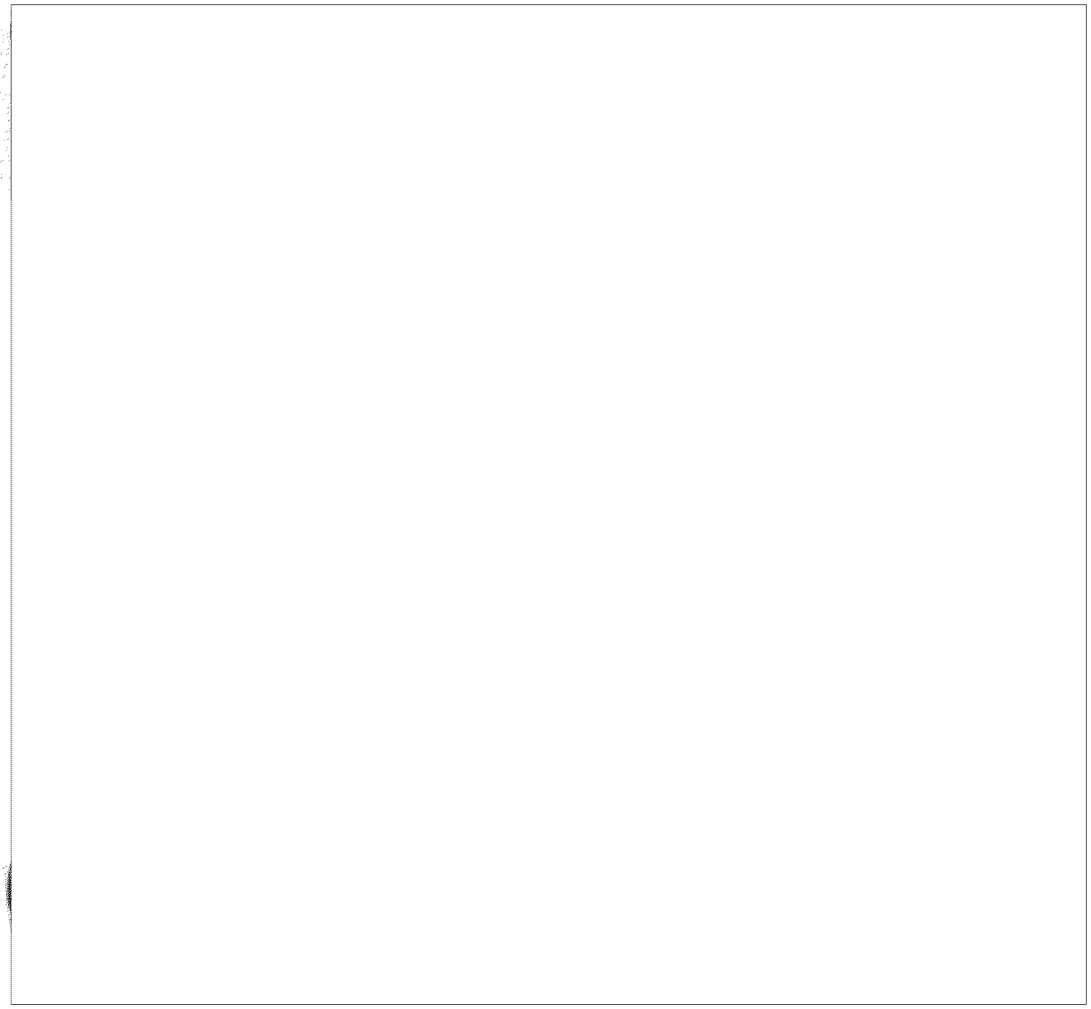
11.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7-01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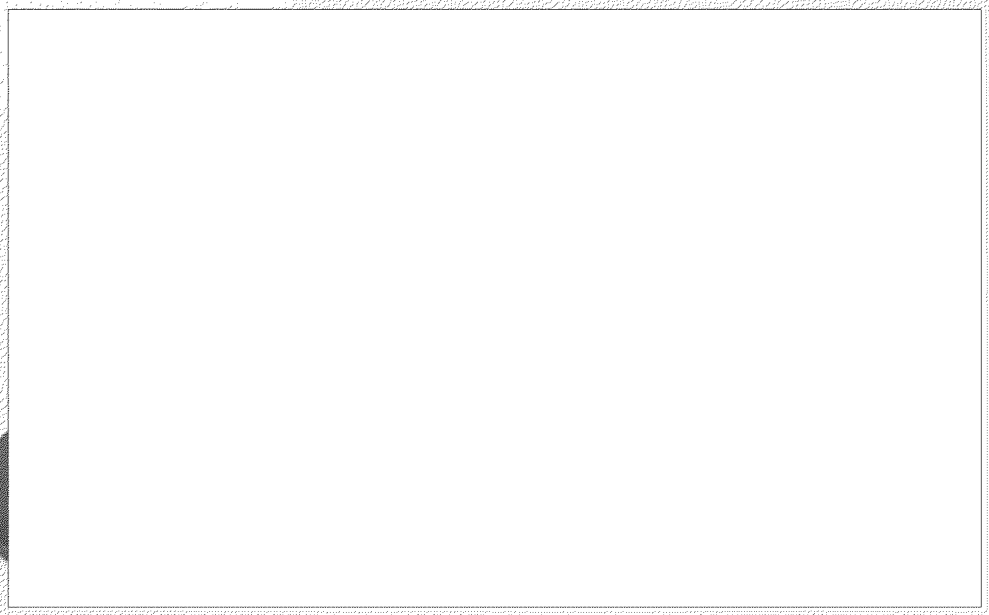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7-01

13.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7-01

14.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7-01

15.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7-01

16.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7-01

17.